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영상자료원 보존 대상에 비디오물 포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18)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영상자료원 보존 대상에 비디오물 포함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7.

다.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 없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영상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해,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

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중한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영상자료원 보존 대상에 비디오물 포함

가. 개정안 요지

- 한국영상자료원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디오물을 선정하여 비디오물영업자로부터 비디오테이프등을 제출받아 보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u>영화필름등</u> 의 보존과 보상 2. ~ 6. (생략) ⑤·⑥ (생략)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u>영화필름등</u> 및 <u>비디오테이프등</u> ----- 2. ~ 6.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5조(<u>영화필름등</u> 의 제출) ①·② (생략) <신설>	제35조(<u>영화필름등 및 비디오테이프등</u> 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한국영상자료원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디오물</u>

③ <u>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u>영화필름등에 대한</u> <u>보상에</u>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u>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한다</u>)을 <u>선정하여 비디오물영업자에게</u> <u>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u> <u>대본, 온라인비디오물의 디지털파일(이하 “비디오테이프등”이라</u> <u>한다)을</u>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화필름등 또는 비디오테이프등</u>----- ----- -----, -----<u>보상</u> <u>에</u>-----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있으며, 영화제작업자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

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게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은 제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
음.¹⁾

○ 개정안은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
디오물을 비디오물영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존할 수 있도록 하
여 영화필름 중심의 기존 보존체계를 디지털 비디오물까지 확
대하려는 것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전승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디스크 등 소중한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⑥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
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
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
고에서 부담한다.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의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적용 범위에 방송사업자 등이 포함되므로 향후 방송분야와 OTT를 포함한 통합미디어 법제 개편시에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또한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사업자인 티빙 등에서는 이미 방송프로그램 중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공공기록물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기증·보관 절차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한 별도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고, 방송사가 자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는 현실과 함께 재산권·영업의 자유 제한 가능성, 제출대상 예측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영상기록물의 특성상 단일 기관 중심의 보존체계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복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존체계와 중복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보완적·분산적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 현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재원 예산 편성 현황

2025년 편성 예산 : 395,950,000원
(1) 제출보상비 지급: 200,000원 x 765편 = 153,000,000원
(2) 제출용 하드디스크 구입: 500,000원 x 2분기 = 1,000,000원
(3) 제출 디지털시네마 온라인 전송시스템(공공 클라우드) 운영: 110,040,000원
(4) 디지털시네마 검수용 소모품 구입: 250,000원 x 4분기 = 1,000,000원
(5) 디지털시네마 검수 시스템(스토리지, 장비) 유지보수: 58,860,000원
(6) 검수 소프트웨어 갱신: 50,000원
(7) 제출적체 처리 용역: 72,000,000원
2026년 편성 예산안: 380,600,000원
(1) 제출보상비 지급: 200,000원 x 765편 = 153,000,000원
(2) 제출용 하드디스크 구입: 500,000원 x 2분기 = 1,000,000원
(3) 제출 디지털시네마 온라인 전송시스템(공공 클라우드) 운영: 110,040,000원
(4) 디지털시네마 검수용 소모품 구입: 250,000원 x 4분기 = 1,000,000원
(5) 디지털시네마 검수 시스템(스토리지, 장비) 유지보수: 55,560,000원
(6) 제출적체 처리 용역: 60,000,000원

☐ 개정안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 : 220백만원(600편 기준)

추가 필요 예산: 220,000,000원
(1) 제출보상비 지급: 200,000원 x 600편* = 120,000,000원
(2) 제출적체 처리 용역: 100,000,000원(행정1인, 검수1인,검수장비 대여)
*50작품×12회차=총 600편(OTT 작품의 선별수집 및 저작권 확보 등의 절차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 인력기준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한 작품규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참고 2

타 부처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수정 사유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개정안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한 비디오물에 대해 원판테이프, 디지털파일 등을 요청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고, 온라인비디오물에는 OTT를 포함하고 있음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의 보존과 보상	<삭제>	○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적용범위에 방송사업자 등이 포함되므로 개정안 전체 삭제 필요
제35조(영화필름등 및 비디오테이프등의 제출)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 온라인비디오물의 디지털파일(이하 "비디오테이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 온라인비디오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도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방송사업자도 적용됨 - 또한,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에 제공된 방송물이 OTT에 제공되는 경우에도 온라인비디오물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방송물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 -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포함) 범위는 방송을 비롯한 부가통신서비스를 하는 모든 콘텐츠가 보존 대상이 되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됨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화필름등 또는 비디오테이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에 필요하나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현재 방미통위, 국회는 방송분야와 OTT를 포함한 통합미디어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구성·운영될「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행안부 정부조직개편 발표, '25.9.7)」에서 OTT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정과제 108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참고 3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구 분	검토 의견
한국방송협회	○ 방송은 이미 충분한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영화는 제작사가 다수·영세하고, 극장은 상영만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한 보존이 필요할 수 있으나 방송은 사업자 수가 제한적이고, 각 방송사가 자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이미 방송프로그램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방송사와 협약하여 일정 프로그램을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어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한 별도의 보존의무 필요성이 없음 ○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 - 방송콘텐츠는 방송사업자가 막대한 자본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제작한 핵심 재산으로, 부가판권, 다시보기, 해외 판매, OTT 독점 공급 등 다층적인 유통 구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영상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가 자유롭게 행사해야 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예측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르면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는 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의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는 그 대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함 - 더구나 영화비디오법 제35조에 따르면 영화의 경우, 상영등급 분류를 받기 위해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는 보존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영화는 영상자료 제출이 등급분류와 연동된 절차인 반면, 방송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분류를 받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 제출이 새로운 의무로 부과된 것인데, 제출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움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 방송사는 해당 비디오물 자료의 귀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자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송사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 필요 시, 협조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IPTV 방송협회	○ 플랫폼이 임의로 원본 자료를 제3의 기관(영상자료원)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기존 계약 범위나 저작권 관련 법률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 및 분쟁 가능성이 증대 - IPTV사업자는 콘텐츠의 저작권자나 원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려면 콘텐츠를 제공한 제작사 및 배급사 등 권리 보유자와의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추가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협의 과정 발생
티빙 (OTT사업자)	○ 콘텐츠 영상은 OTT 사업자의 사적 재산이자 핵심 자산으로, 이에 대한 제출의무 부과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 -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디오물'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 재량에 따라 제출의 의무가 부여될 우려가 존재 - 사업자가 자체 보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국가가 별도 제출 의무를 부과할 정도의 공공 필요성이 낮음 - 필름 제작물의 물리적 유실 위험을 전제로 한 기존 제도를 그대로 OTT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목적과 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 - 과거 영화의 경우 상영 종료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청 접근성이 제한되었지만, OTT 콘텐츠는 대중들의 시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의무 부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낮음 - 한국영상자료원은 제출 자료를 무료 열람·이용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 플랫폼의 독점 콘텐츠 제공은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